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산업경제위원회
1998. 12. 21.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8년 12월 5일
- 회부일자 : 1998년 12월 5일

다. 상정 일자 : 제155회 정기회

-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1998. 12. 21)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가. 제안 이유

- 농촌진흥법에 명시된 농업인단체를 포함시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제110조 등 법규와 적합토록 하며 제1차 조직개편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 골자

- 농촌진흥법에 적합토록하여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여성농업인연합회를 관련단체에 포함시킴.
- 기금의 예치관리를 도금고로 일원화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결산보고서를 도의회 심의 의결토록 개정
- 제1차 조직개편으로 조성된 기구 및 직위를 새로운 조직에 맞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 노 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조례의 공통적 내용을 규정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여성농업인연합회를 관련단체에 포함시키며 기금의 예치관리를 도금고로 일원화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를 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안 제14조 제3항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은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수 정 안 요 지 :

가. 수 정 이 유

-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와 불일치하여 일치시키고자 함

나. 수정 주요 골자

- 제14조 제3항중 “다음 회계연도”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로 한다

7. 심 사 결 과: “ 수정 및 가결 ”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

10. 별 첨

-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조문대비표
-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 조문대비표